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0가단336492 판결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헌

담당변호사 박보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윤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골드웨이

담당변호사 정주헌

변론 종결 2024. 9. 12.

판결 선고 2024.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83,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1.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6,480,000원 및 그 중 7,81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2.부터,

3,905,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0.부터, 3,8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25.부터, 7,755,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7.부터, 2,6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5.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5,001,1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 기타 정보서비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웹사이트 개발, 웹프로그램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2019. 4. 12. 피고와 성형외과 비교 견적 플랫폼 사업을 위한 홈페이지(PC 버전)(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와 어플리케이션(모바일 버전)(이하 '이 사건 어플'이라 한다)을 제작기간 2019. 4. 12.부터 2019. 7. 25.까지, 제작금액 14,200,000원으로 하여 제작(이하 '이 사건 개발 업무'라 한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DOCUMENT: 이 사건 계약 내용(이미지 생략)

○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비용을 지급하였다.

1	2019. 4. 12.	7,810,000	계약금
2	2019. 6. 20.	3,905,000	중도금
3	2019. 6. 25.	3,850,000	잔금
4	2019. 7. 17.	7,755,000	추가제작비
5	2019. 11. 25.	420,000	추가제작비
6	2019. 11. 25.	2,240,000	추가제작비

1	2019. 4. 12.	7,810,000	계약금
7	2019. 12. 27.	500,000	추가제작비
합계	26,480,000		

○ 이 사건 개발 업무가 지연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9. 10., 2020. 1., 2020. 3., 2020. 5.까지로 4차례 이 사건 개발 업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 그러나 연장된 계약 기간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개발 업무를 완성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20. 7. 15. 피고에게 2020. 7. 31.까지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5,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2020. 7. 15.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비용 26,48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리라 신뢰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급여 합계 55,001,117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 원고 또한 개발기간 연장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

○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1)에 따라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원고가 지출한 급여 상당액은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게 원고가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이므로 피고가 신뢰이익으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

○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채무와 손해배상채무가 있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범위를 초과하여 개발하여 초과 개발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의 초과 개발비용 채권과 원고의 채권을 상계한다.

3.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가. 2020. 7. 15. 기준 감정 사항

1) C 웹사이트 IA(Information Architecture, 갑 21호증) 기준 (가) 피고가 완성한 항목

○ 프론트(PC) 기능에서는 02. 병원보기-리스트페이지의 1. 갤러리 형태의 썸네일 리스트 및 2.

카테고리별 병원리스트 노출 항목

○ 프론트(모바일) 기능에서는 02. 병원보기-리스트페이지의 1. 갤러리 형태의 썸네일 리스트 및 2.

카테고리별 병원 리스트 노출 항목

(나) 완성도

○ 프론트(PC) 기능은 4.7%, 프론트(모바일) 기능은 23.2%

2) 이 사건 홈페이지 및 어플에 관하여 웹사이트 IA에 기재된 모든 페이지 및 기능들을 테스트한 캐시

파일 존재 여부: 없음

나. 이 사건 홈페이지 및 어플 완성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미지 등 자료의 기여도

○ 개발을 위한 기획서 또는 요건정의서(주문서) 수준으로 사업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음

다. 2020. 7. 15. 이후 이 사건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중 제작된 부분

○ 2020. 7. 15. 이후에는 제작되지 아니함

라. 피고가 당초 개발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발한 물량

○ PC 부문은 18.4FP(Function Point, 기능점수), 모바일 부문은 33.6FP, 총 52.0FP

마. 초과 개발 물량에 들어가는 제반비용

○ '2020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기준'의 기능점수 방식에 따라 산정

○ PC 부문의 18.4FP: 9,511,874원

○ 모바일 부문의 33.6FP: 17,369,509원

○ 총 26,881,383원

4.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및 원상회복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참조).

○ 원고가 2020. 7. 15.경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피고에게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내용증명에서 기재한 최고 기간을 도과한 2020. 8. 1.경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적어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

○ 피고는 원고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행지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연장된 기한 내에도 이 사건 개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4차례 기간이 연장되어 2020. 5.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개발 업무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20. 7. 15.경에도 이 사건 개발 업무는 홈페이지 기능은 4.7%, 모바일 기능은 23.2%만 진행되어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2020. 7. 15. 이후에 이 사건 개발 업무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구동하여 실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에서 원고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결제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제1항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고, 제3항에서 갑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이상 위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 통지로 2020. 8. 1.경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대금 26,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신뢰이익 배상에 관한 판단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31.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4.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개발 업무 진행 관리, 이 사건 홈페이지 및 어플 관리 등을 위하여 2019. 7.경 D을, 2019. 6.경 E을, 2019. 7.경2) F를 각 고용하여 급여를 지출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직원들을 고용한 때는 당초 이 사건 홈페이지 및 어플이 완성되었어야 할 시기와 가깝다.

○ 결국 위 고용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홈페이지 및 어플이 완성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급여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한편, 원고는 2020. 5. 28. 다른 업체와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무렵부터 원고가 지출한 직원 급여는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0. 7.(2020. 6.분 급여), 2020. 8.(2020. 7.분 급여)에 지출한 직원 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또한 원고는 E 및 D에 대하여 2019. 4. 및 2019. 5.부터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지출한 급여 비용 중 인정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1	E	2019. 7. ~ 2020. 6.	22,815,759
2	D	2019. 8. ~ 2020. 6.	6,301,271
3	F	2019. 8. ~ 2020. 6.	20,768,057
합계	49,885,087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작 금액 14,200,000원이 이행이익이므로 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행이익은 순이익과 이미 지출한 비용 내지 향후 지출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지출한 급여비용(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885,0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상계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초과 개발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개발 업무 범위를 넘어 초과하여 개발한 비용은 26,881,383원이다.

○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 채권 및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이 사건 개발 업무 대금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3) 나머지 손해배상 채권은 49,483,704원[= 49,885,087원 - (26,881,383원 - 26,48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483,7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9.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정현

1) 제11조 계약의 해지

(1)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본다.

(2) "을(피고)"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그 시점에서 "갑(원고)"이 결제한 대금 전체를 배액 배상한다.

(3) "갑(원고)"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결제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4) "갑(원고)"과 "을(피고)"은 상대방이 계약을 심각히 위배하여 개발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5) "갑(원고)"의 중대한 책임 및 일방적 계약 해지시 "갑(원고)"은 계약금을 초과한 작업물에 대해 정보통신부 용역대가에 의거한 인력 및 제반 용역비용 기준으로 용역물의 최종 완성과는 무관하게 "을(피고)"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2) 각 직원이 고용된 때는 이체확인증에 처음 기재된 급여일 전월로 보인다.

3) 8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상계를 하는 경우 원본에서 하는 것에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